

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16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17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20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3. 11. 28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(2023. 6. 11. 시행)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인원 및 구성 변경(안 제2조)

나. 위원장 부재 시 대행자 변경(안 제3조)

다.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명시(안 제4조)

라. 위원회 회의 절차 및 의사·의결 정족수 명시(안 제6조)

마. 회의 시 이해관계인 참석 및 자료 제출 요구 명시(안 제8조)

바. 위원회 참석 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미반영[복지지원과-35206(2023. 9. 11.)]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조항 : 제2조(구성)제1항 ⇒ 고성군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민간위원은 6인 이내로 한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조항 : 제2조(구성)제1항 ⇒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고성군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민간위원은 6인 이내로 한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의견 미반영 ⇒ 상위법에 규정되어 당연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미반영함.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421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9. 11. ~ 2023. 10. 04.(23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명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위원회의 인원 및 구성 변경(안 제2조)

○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, 위원 구성을 9명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 것은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·의결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임.

<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>

제88조의2(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)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
2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
3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
4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
5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,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[본조신설 2023. 6. 9.]

- 위원장 부재 시 대행자 변경(안 제3조)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9조에서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.

-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명시(안 제4조)

- 「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서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함.

- 위원회 회의 절차 및 의사·의결 정족수 명시(안 제6조)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2 제5호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함.

- 회의 시 이해관계자 참석 및 자료 제출 요구 명시(안 제8조)

- 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위원회 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함.

-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(안 제12조)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2조에서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.

-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지명 위원회를 원활히 구성·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위임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반영이 필요하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7. 토 론 : 없음.

8. 심사결과 : 2023. 11. 28. 원안가결